

세액공제신청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|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즉시 |
|------|-----|------|----|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신청인 | ① 상호 또는 법인명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| ③ 대표자 성명 | ④ 생년월일 |
| |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| |

(전화번호:)

| | | |
|---|-------|---------|
| ② | 월 일부터 | 년 월 일까지 |
|---|-------|---------|

③ 신청 내용

| ⑥ 구 | 분 | ⑦ 근거법령 | ⑧ 코드 | ⑨ 공제율 | ⑩ 대상세액 | ⑪ 공제세액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⑩ |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| 영 제4조제8항 (2021.2.17.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31 | | | |
| ⑩ |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6조의4제4항 | 14Z | | | |
| ⑩ |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| 영 제7조의2제4항 | 14M | | | |
| ⑩ |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| 영 제7조의2제8항 | 18D | | | |
| ⑩ |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7조의2제12항 | 18L | | | |
| ⑩ |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7조의2제16항 | 18R | | | |
| ⑩ |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 | 영 제9조제14항 | 13L | | | |
| ⑩ |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 | 영 제9조제14항 | 10E | | | |
| ⑩ |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 | 영 제9조제14항 | 13M | | | |
| ⑩ |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 | 영 제9조제14항 | 16A | | | |
| ⑩ |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 | 영 제9조제14항 | 10D | | | |
| ⑩ |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 | 영 제9조제14항 | 16B | | | |
| ⑩ |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1조제6항 | 176 | | | |
| ⑩ |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1조의3제14항 | 14T | | | |
| ⑩ |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1조의4제12항 | 14U | | | |
| ⑩ |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2조의2제5항 | 18E | | | |
| ⑩ |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| 영 제12조의3제15항 | 18N | | | |
| ⑩ |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공제 | 영 제12조의3제15항 | 18P | | | |
| ⑩ |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| 영 제17조제5항 | 18H | | | |
| ⑩ |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 | 영 제21조제13항 | 13W | | | |
| ⑩ |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 | 영 제21조제13항 | 13X | | | |
| ⑩ |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 | 영 제21조제13항 | 13Y | | | |
| ⑩ |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 | 영 제21조제13항 | 1B1 | | | |
| ⑩ |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 | 영 제21조제13항 | 1B2 | | | |
| ⑩ |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 | 영 제21조제13항 | 1B3 | | | |
| ⑩ |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11제7항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8I | | | |
| ⑩ |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34 | | | |
| ⑩ |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2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77 | | | |
| ⑩ |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3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A | | | |
| ⑩ |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4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2 | | | |
| ⑩ |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5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36 | | | |

| ⑥ 구 분 | ⑦ 근거법령 | ⑧ 코드 | ⑨ 공제율 | ⑩ 대상세액 | ⑪ 공제세액 |
|---|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⑬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6 (2021. 2. 17.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35 | | | |
| ⑬③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8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B | | | |
| ⑬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9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8B | | | |
| ⑬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기본공제) | 영 제22조의10제6항 | 18C | | | |
| ⑬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추가공제) | 영 제22조의10제6항 | 1B8 | | | |
| ⑬⑦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2조의11제5항 | 1B7 | | | |
| ⑬⑧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|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| 14N | | | |
| ⑬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2제3항 | 14S | | | |
| ⑬⑩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3제6항 | 14X | | | |
| ⑬⑪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3제6항 | 18J | | | |
| ⑬⑫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4제17항 | 14Y | | | |
| ⑬⑬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5제11항 | 18A | | | |
| ⑬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7제10항 | 18F | | | |
| ⑬⑮ 통합고용세액공제 | 영 제26조의8제11항 | 18S | | | |
| ⑬⑯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) | 영 제26조의8제11항 | 1B4 | | | |
| ⑬⑰ 통합고용세액공제(육아휴직 복귀) | 영 제26조의8제11항 | 1B5 | | | |
| ⑬⑱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27조의3제3항 | 18K | | | |
| ⑬⑲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| 법 제30조의2제4항 (2022. 12. 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H | | | |
| ⑬⑳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| 법 제30조의4제5항 | 14Q | | | |
| ⑬㉑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| 법 제30조의4제5항 | 18G | | | |
| ⑬㉒ 상환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96조의3제8항 | 10B | | | |
| ⑬㉓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99조의11제4항 | 18Q | | | |
| ⑬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납세의무자) | 영 제104조의5제6항 | 184 | | | |
| ⑬㉕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세무법인) | 영 제104조의5제6항 | 14J | | | |
| ⑬㉖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04조의14제2항 | 14E | | | |
| ⑬㉗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| 영 제104조의15제6항 | 1B6 | | | |
| ⑬㉘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| 영 제104조의20제5항 | 140 | | | |
| ⑬㉙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04조의22제3항 | 14P | | | |
| ⑬㉚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| 법 제104조의18제1항 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I | | | |
| ⑬㉛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| 법 제104조의18제2항 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K | | | |
| ⑬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| 법 제104조의18제4항 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| 14R | | | |
| ⑬㉝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| 영 제104조의27제3항 | 18M | | | |
| ⑬㉞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04조의29제2항 | 10C | | | |
| ⑬㉟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| 영 제117조의4제4항 | 14W | | | |
| ⑬㊱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| 법 제126조의7제13항 | 14V | | | |
| ⑬㊲ 세액공제 합계 | | 1A3 | | | |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,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.
2.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.
3. ⑩ 대상세액란: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4. ⑪ 공제세액란: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⑦ 근거법령란에서 ‘법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‘령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합니다.